

지주이용 간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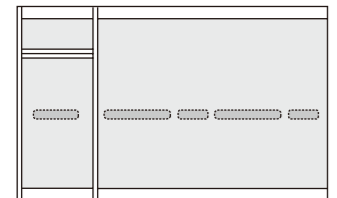
구분	표시 방법
표시규격	- 면 적 : 1면 3㎡ 이내 - 높 이 : 지면으로부터 5m 이내
설치방법	- 위 치 :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거리 - 형 태 : 4개 업소 이상 연립만 허용



최대면적 1면 최대 3㎡ 이내로 표시
세로크기 최대 5m 이내로 표시
보도가 없는 지역은 차도로부터 1m이상 거리
*미관지구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
3m이상의 거리를 두어 표시

창문이용 광고물

구분	표시 방법
표시위치	- 건물 3층 이하에 창문 또는 출입문 -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이 30cm이하 - 창문 내·외부에 입체형 점멸방식 금지
표기내용	- 유리면 안전띠 개념으로 표시 - 상호, 전화번호, 영업내용 등 표시 가능



상호 또는 브랜드명 외에
전화번호, 영업내용 등을 표기 할 수 있다.
단, 안전띠 개념으로 높이 30cm 이하로
작게 표시한다.



좋은 간판만들기 10원칙

- 1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다.**
간판이 너무 크면 보행자가 한눈에 보기 어렵다.
- 2 건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한다.**
건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
- 3 너무 많이 달지 않는다.**
1업소 1간판 원칙, 업소 수가 많을 경우 연립형 활용
- 4 악센트는 부분적으로 사용한다.**
원색은 주변이 차분한 상태에서 부분적 적용
- 5 글씨는 여백을 두어 적용한다.**
여백없이 글씨만 가득한 간판은 읽기 어렵다.
- 6 주 표기내용과 보조표기내용을 구분한다.**
중심내용을 강조하고 보조내용은 작게 표기한다.
- 7 건축물을 배경으로 활용한다.**
건물벽면을 최대 활용, 간결한 입체문자 적용
- 8 업소의 특징요소를 개발한다.**
고유색상, 독특한 서체 및 재질은 차별화 요소
- 9 자극적인 디자인은 피한다.**
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은 거부감을 준다.
- 10 간판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.**
더럽고 녹슨 간판은 업소이미지에 부정적이다

❖ 광고물 허가(신고) 및 설치문의는

건축과 광고물관리팀
☎ 02)901-2582~3

좋은 간판 제작지침서



SIGNBOARD DESIGN GUIDE BOOK

 강북구

광고물 허가(신고) 기준

❖ 지역구분 상 설치개수

- 상업지역, 공업지역, 준주거지역 : 2개
- 일반·전용주거지역, 녹지지역 : 1개

❖ 설치장소 : 건물의 벽면

❖ 벽면이용 간판(건물외벽 벽면에 부착된 간판)

- 3층 이하에 설치
- 4층 이상의 건물 최상단 : 입체형 문자(건물 폭 1/2 범위내 설치)
벽면으로 돌출되는 부분(두께)은 30cm 이내

❖ 돌출형간판(건물 모서리에 부착된 간판)

- 건물의 한쪽 모서리에 한줄로 설치
- * 단, 건물 전면 폭이 20m 이상일 경우 구 심의위원회
심의를 얻어 양쪽 모서리에 설치

❖ 지주이용 간판(건물 부지내 설치된 간판)

- 1개(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설치)
- 미관지구 :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3m 이내
-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거리
- 보도가 없는 지역은 차도로부터 1m이상 거리

※ 허가(신고)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옥외
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
규정에 의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법 제10조의3 규정에
의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, 또한 시정명령
미이행시 해당 광고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타 법령에 따른 영업
이나 그밖의 행위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강북구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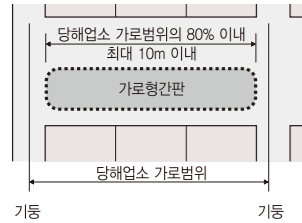
간판 유형별 표시 방법

● 벽면이용 간판(가로형)

1.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

구분	표시 방법
표시규격	- 가로 : 당해 업소 전면 폭의 80% 이내, 최대 10m 이내 - 세로 : 판류 80cm 이내, 입체형 45cm 이내
표기내용	- 상호, 브랜드명 위주 표기로 여백 확보 (취급 품목, 메뉴, 실물이미지 표기 금지) - 외벽이 유리 마감 건축물의 경우 판류형 표시금지

가로크기



세로크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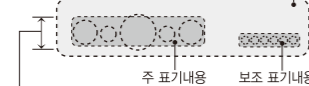
입체형



-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최대 45cm 이내로 표기



판류형



-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간판 세로크기 이내로 표기



2. 연립형 벽면이용 간판

구분	표시 방법
표시규격	- 건물 5층 이하의 벽면, 총 면적 8㎡ 이내
표기내용	- 총 수량에 포함 - 상호명 등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 - 꼭각 지점에서는 ㄱ자 형태로 표시 가능

크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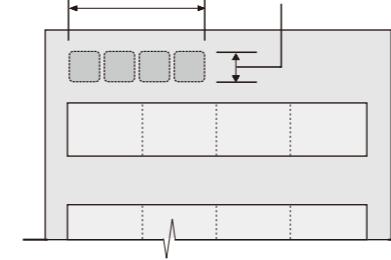
- 전체 총면적 8㎡ 이내로 표시.



3. 건물상단에 표시하는 간판

구분	표시 방법
표시규격	-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• 가로 : 건물 폭의 1/2 이내 • 세로 : 최대 3m 이내
설치위치	건물상단 중 3면에 입체형간판 각각 표시 가능

가로로 표시하는 경우



가로크기
건물최상단 가로크기의 1/2 이내로 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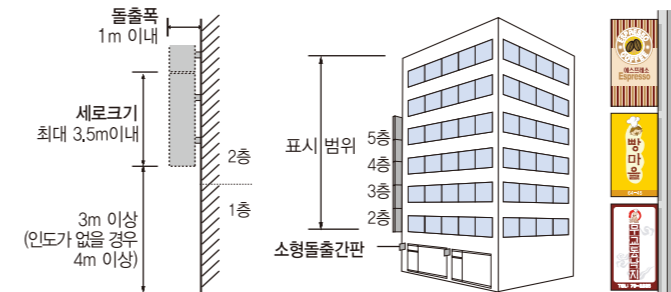
세로크기
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15cm 증가 최대 3m 이내로 표시



● 돌출 간판

1. 돌출 간판

구분	표시 방법
표시규격	- 돌출폭 : 1m 이내(벽면으로부터) - 세로크기 : 최대 3.5m 이내, 두께 30cm 이내
표시방법	• 표기내용의 크기는 간판면적의 1/3 이내로 표기하거나 • 주 표기내용의 평균 가로크기를 간판 가로크기의 1/2 이내로 표기 • 보조 표기내용의 크기는 간판 면적의 1/6 이내로 표기
설치위치	건물 폭이 20m 이상일 경우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 건물 양측 단에 표시 가능



2. 소형 돌출간판

구분	표시 방법
표시규격	개별크기 : 최대 0.36㎡ 이하, 두께 0.2m 이내
설치위치	도로에서 직접 진·출입이 가능한 1층 업소의 좌·우측 한 곳에만 설치
표기내용 등	심의를 받아 표시, 총 수량에 미포함

- 소형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돌출간판 설치 금지

